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 범위에 복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u>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 ----- ----- ----- ----- <u>실시하여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u>
<신설>	6. <u>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u>

5. (생 략)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

-----하여야 한다.

③ -----
-----기관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유로 승진·근무성적평정·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람
<u><신설></u>	3.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한 사람
2.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20782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으로 제29조의2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위탁기관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 범위에 복직 지원,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안 제29조의2제1항)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및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의무화함.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해당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

으로 보임.

- 다만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¹⁾

이를 고려하여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신설 당시 심사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96호)」)의 내용 중,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조항과 유사한 현행법의 문구로 수정가결²⁾되어 개정된 바 있음.

- 아울러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신설이 포함된 「교원지위법」은 2025.9.19.부터 시행되어 개정법률에 따른 성과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 경과를 지켜본

1)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2)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2.23.

후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강경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396호)	현행 「교원지위법」 (법률 제20782호)	김준혁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794호)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포함함.
-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함.
- 개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의 경우, 병가·휴직의 종류와 사유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복직 지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제6호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는 정신건강 위해요인의 범위가 넓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과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는 모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현행 「교원지위법」 (법률 제20782호)	김준혁의원안 (의안번호제2214794호)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 6.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위탁기관 확대,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 개정안은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위탁기관으로 의료기관에 더하여 전문상담기관을 규정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개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에 비중을 두어 위탁 가능기관으로 전문상담기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의료

기관과 같이 하위규정에서 적정 요건을 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정안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여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위탁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교원지위법」 (법률 제20782호)	김준혁의원안 (의안번호제2214794호)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의료기관에</u>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u>의료기관에</u>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u>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u>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u>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하여야 한다</u>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u>의료기관과</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u>구축할 수 있다</u>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u>기관과</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 한다</u> .

3) (안 제29조의2제4항) 교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의무적 실시

- 개정안은 제29조의2제4항에서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파악, 효과 측정 등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태조사가 규정된 제29조의2제4항에는 교육감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실태조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규정된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³⁾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목적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관련 조항에서, 조사 항목을 특정하고 실태조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4)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교원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교육감의 자료요청 권한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신설 당시 심사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96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가결⁵⁾하여 개정된 바 있으므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강경숙의원안 (의안번호제2202396호)	현행 「교원지위법」 (법률 제20782호)	김준혁의원안 (의안번호제2214794호)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반영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④ 교육감은 매년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2.23.

3) (안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34조제2호 및 제3호)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정보 제공 금지, 관련 벌칙

- 개정안은 제29조의2제5항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유로 승진·근무성적평정·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항에서 누구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이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잘못된 사용 또는 유출로 교원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불이익 조치 및 정보 제공·공개 금지,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34조제3호는 제29조의2제6항(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공개 금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낮아 교원의 정신건강 정보 보호 관련 제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u>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u>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u>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u>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u>(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u>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u>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u>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u>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한 사람</u> *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⑥ 누구든지 <u>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안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 교육부: 신중검토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원에게 안정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법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2396, '24.7.30.)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의 법적정합성과 민감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정 의결('24.12.23., 법안심사소위)되어 개정된 것임.
-	법률이 시행('25.9.19.)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개정은 법적 안정성, 정책 신뢰성,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시행 결과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필요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인력·예산 제약으로 형식적인 사업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현제도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며, 행정부담이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국가와 지자체, 학교 등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고려하여 원안(추진하여야 한다)을 수정의결한 것이므로, 해당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정신건강증진사업 범위 확대	
○ 교육부: 신중검토	
-	병가·휴직 후 복직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 및 차별가능성이 있음.
-	정신건강위해요인 개선 조치는 구조적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우려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은 현행 법률 상으로도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개정안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위해요인 개선 조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위탁기관 확대,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 교육부: 일부수용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범위에 현행 의료기관 외에 전문상담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위탁기관의 다양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적 편차를 고려할 때 교육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설립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합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상호협력체계 구축 의무화는 특혜를 준다는 잘못된 선입견 줄 수 있음.
(안 제29조의2제4항) 교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의무적 실시
○ 교육부: 신중검토 -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2396, '24.7.30.)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과의 법적 정합성 및 민감정보 보호를 이유로 삭제 의결('24.12.23., 법안심사소위)된 바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유출 우려가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학교 현장 혼란 발생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응답 거부 또는 소극적 응답, 교원을 위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편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및 낙인 효과 발생,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위험 우려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교원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할 수 있고, 정신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정신건강실태조사 의무화로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자발적인 상담 기피 우려가 있음.
(안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34조제2호 및 제3호)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정보 제공 금지, 관련 벌칙
○ 교육부: 이견없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화하는 경우, 교원의 인권보호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벌칙 조항이 신설될 경우, 정보유출을 우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